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울산지방검찰청
 전문공보관 김은심
 전화 052-228-4462

보도자료
 2021. 6. 14.(월)

제 목 A社, 중대재해 사고 관련 대표이사 등 18명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처분 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0조 제2항)

●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(부장검사 임대혁)는 '19. 9.경부터 '20. 5.경까지 A사에서 연달아 발생한 5건의 산재사망사고와 노동청 특별점검에 따른 안전 조치의무위반과 관련하여 A사 대표이사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(16명 불구속 구공판, 2명 구약식)

1 피고인 및 처분 내용

| 순번 | 피고인 | 직위 | 죄명 | 처분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가○○ (63세) | A사 대표이사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 | '21. 6. 7. 불구속 구공판 ※ 가○○, 나○○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혐의 |
| 2 | 나○○ (62세) | 前 A사 본부장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| |
| 3 | 다○○ (61세) | 前 A사 본부장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| |
| 4 | 라○○ (57세) | A사 본부장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| |
| 5 | 마○○ (58세) | A사 팀장 | 업무상과실치사 | |
| 6 | 바○○ (61세) | B사 대표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| |

| 순번 | 피고인 | 직위 | 죄명 | 처분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7 | 사○○ (67세) | B사 현장소장 | 업무상과실치사 | '21. 6. 7. 불구속 구공판 |
| 8 | 아○○ (41세) | A사 과장 | 업무상과실치사 | |
| 9 | 자○○ (47세) | D사 대표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| |
| 10 | 차○○ (45세) | D사 현장소장 | 업무상과실치사 | |
| 11 | 카○○ (46세) | A사 과장 | 업무상과실치사 | |
| 12 | 타○○ (40세) | A사 근로자 | 업무상과실치사 | |
| 13 | 파○○ (40세) | A사 과장 | 업무상과실치사 | '21. 6. 7. 구약식 |
| 14 | 하○○ (57세) | A사 팀장 | 업무상과실치사 | |
| 15 | 거○○ (54세) | C사 대표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| '21. 6. 7. 불구속 구공판 ※ A사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혐의 |
| 16 | A사 | 도급인(원청)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 | |
| 17 | B사 | 협력사(하청)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 | |
| 18 | C사 | 협력사(하청)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 | |

* D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라서 별도로 입건이 안 됨

2

공소사실 요지

| 순번 | 피고인 | 공소사실 요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| 다○○ 마○○ 바○○ 사○○ A사 B사 | '19. 9. 20.경 A사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, 임시경판헤드를 크레인에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분리 작업(가우징)을 진행하던 중, 헤드가 분리·추락하여 하청업체 근로자 머리 부분이 협착사망 [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사] |

| 순번 | 피고인 | 공소사실 요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2 | 나○○ 아○○ 자○○ 차○○ A사 | '20. 2. 22.경 A사 트러스(작업 발판) 조립 작업장에서,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약 17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추락사망 [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사] |
| 3 | 라○○ 카○○ 타○○ A사 | '20. 4. 16.경 A사 수중함 정비 작업장에서, 수중함 발사관 조정 작업 중 작업계획서 작성 등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사 근로자가 발사관 문에 협착사망 [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사] |
| 4 | 파○○ 하○○ | '20. 4. 21.경 A사 도장 공장에서, 빅도어에 임시 고정장치 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사 근로자가 빅도어 작동 중 임시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빅도어에 접근하였다가 빅도어 사이에 협착사망 [업무상과실치사] |
| 5 | 나○○ 거○○ A사 C사 | '20. 5. 21.경 A사 LNG선 갑판에서, 출입금지 표시판 게시 등 밀폐공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배관 내부에 들어가 질식사망 [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사] |
| 6 | 가○○ A사 | '19. 9.경부터 '20. 7.경까지 4차례의 노동청 정기·특별 안전점검 중, A사 각 사업부에서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발견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 |

3

수사 의의

-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추어 A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하였고,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- 울산지방검찰청은 산업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향후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 